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한덕수 (행정안전부 소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광역도시계획 수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(5급 1명, 6급 1명)을 감축하고, 디자인박물관 및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(7급 1명)의 존속기한을 2023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0000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2023년 3월 31일”을 “2025년 3월 31일”로 한다.

별표 3 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표 제3호 중 “2023년 3월 31일”을 “2025년 3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한시정원) ① (생 략)	제17조(한시정원) ① (현행과 같 음)
② <u>광역도시계획 수립 관련 업 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「행정기 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 년 3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 둔다.</u>	<u><삭 제></u>
③ 디자인박물관 및 디지털문화 유산영상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 하여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<u>2023년 3월 31일까지</u>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2025년 3월 31일</u> ----- ----- 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45